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1 발의연월일: 2020. 12. 31.

발 의 자:한기호·김희국·양금희

안규백 · 홍준표 · 장제원

태영호 • 윤주경 • 신원식

조수진 • 곽상도 • 백종헌

의원 (12인)

제안이유

현재 병사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병장으로 진급하고 있음.

그러나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공석에 따른 진급제도 등으로 인해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명예감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였던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병장으로 특별진급 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권자(안 제5조)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기관장이 행하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6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은 사실조사 등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 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 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4. "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특별진급 결정권자)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 장이 행한다.
- 제6조(사실조사 등) ①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① 복무 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특별 진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전역일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특별진급한 것으로 본다.
 - ③ 복무 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상등병 만기전역자 가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특별 진급 대상자인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

- 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그 밖에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복무 기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신청인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제9조(보상 등의 제한)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